

광주지방법원 2021. 4. 28 선고 2020가단54958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론 종결 2021. 4. 7

판결 선고 2021. 4. 28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와 D,E 사이의 2016. 8. 16. 체결된 150,000,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
피고는 원고에게 150, 000,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연 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주식회사 F은 D, E에 대하여 대전자방법원 천안지원 2009차1535호로 'D, E는 G, H과 연대하여 주식회사 F에게 511,886,526원과 그 중 217,228,992원에 대하여 2008.11. 1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'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, 위 지급명령 정본이 2009. 7. 6. D, E에게 각 송달되어 2009. 7. 21. 확정되었다.

나. 위 D, E에 대한 채권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2016. 2. 16. 주식회사 I에, 2018. 5. 16. J 주식회사에, 2019. 8. 19. 원고에게 각 양도되었다.

다. D, E의 딸인 피고는 2016. 7. 14. K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L 외 2필지 M아파트 N호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을 150,000,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6. 8. 16. 접수제26965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내지 6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 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당사자들의 주장

1) 원고

당시 만 24세에 불과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자력이 없었으므로, D, E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,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D, E와 피고 사이의 150,000,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 배상으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.

2) 피고

이 사건 부동산은 당시 경제활동을 하여 마련한 피고의 자금과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 채무를 승계하여 매수한 것이고 D, E로부터 부동산 매수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.

나. 판단

살피건대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D,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

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이은정